

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Big Pot 통장』 특약(구 하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약관명에 구행명 삭제, 조항명 변경, 가입대상에 개인사업자 추가, 중복가입 불가 문구 삭제, 카드사명 변경, 증권사명 변경, 행명 변경, MMDA 결산일 변경, 문구 명확화, 항 삭제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『Big Pot 통장』 특약(구 하나은행)</p> <p>제 1 조 약관의 적용 BIGPOT 통장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한다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<u>“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” 과 “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(구 하나은행)”, “하나 증권계좌저축 특약(구 하나은행)”</u>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.</p> <p>제 2 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보통예금, 저축예금, MMDA 로 합니다.</p> <p>제 3 조 가입대상 ① 이 예금의 가입 대상은 <u>하나대투증권</u> 연계 CMA 증권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<u>실명의 개인</u>으로 합니다. ② 이 예금은 <u>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, 수수료면제 통장과 중복가입은 불가합니다.</u></p> <p>제 4 조 이자지급 ①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예금의 종류별 해당 기준일에 쉼하여 기준일에 이은 익일 (이하 ‘월가일’이라한다)에 원금에 더합니다. 1. 보통예금 및 <u>MMDA: 매년6월, 12월의 제3금요일</u> 2. 저축예금: 매년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금요일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 5 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① 이 예금은 신규가입 시 익월말까지 월10회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<u>단, 기존의 수수료면제 통장 가입고객은 제외합니다.</u> ② 은행은 아래에 명시된 이 예금가입자의 우대서비스 대상요건(이하 “우대요건”이라 합니다)의 월별실적을 매일 평가하여 우대요건 중 1건 충족 시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10회까지 제공 하며, 우대요건 중 2건 충족 시 5회 면제를 추가하며, 우대요건 중 3건 이상 충족 시 무제한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.</p>	<p>『Big Pot 통장』 특약</p> <p>제 1 조 적용범위 “BIGPOT 통장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한다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<u>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 과 『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』, 『하나 증권계좌저축 특약』</u>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.</p> <p>제 2 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보통예금, 저축예금, MMDA, <u>기업자유예금</u>으로 합니다.</p> <p>제 3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 대상은 <u>하나금융투자</u> 연계 CMA 증권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<u>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</u>이며, <u>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.</u></p> <p>제 4 조 이자지급 ①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예금의 종류별 해당 기준일에 쉼하여 기준일에 이은 익일 (이하 ‘월가일’이라한다)에 원금에 더합니다. 1. 보통예금: 매년6월, 12월의 제3금요일 2. 저축예금 및 <u>MMDA: 매년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금요일</u></p> <p>② (좌동)</p> <p>제 5 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① 이 예금은 신규가입 시 익월말까지 월10회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<u>단, 기존의 다른 수수료면제 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</u> ② 은행은 아래에 명시된 이 예금가입자의 우대서비스 대상요건(이하 “우대요건”이라 합니다)의 월별실적을 매일 평가하여 <u>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해</u> 우대요건 중 1건 충족 시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10회까지 제공 하며, 우대요건 중 2건 충족 시 5회 면제를 추가하며, 우대요건 중 3건 이상 충족 시 무제한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.</p>	<p>구행명 삭제</p> <p>조항명 변경</p> <p>구행명 삭제</p> <p>과목 추가</p> <p>증권사명 변경</p> <p>가입대상 추가</p> <p>중복가입 삭제</p> <p>MMDA 결산일 변경</p> <p>문구 명확화</p> <p>문구 명확화</p>

<p>(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요건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이 예금을 하나대투증권 증권계좌로 등록하고 월 1회 이상 증권매매 거래 시 3. 하나SK카드사와 당행 제휴카드사의 신용(체크)카드를 합하여 월10만원 이상 이 예금에서 결제 시 4. ~ 5. (생략) <p>(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생략) ③ 이 예금과 하나대투증권의 CMA 증권계좌 간의 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면제됩니다. 단, 창구거래는 수수료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④ (생략) <p>제 6 조 스윙서비스 (Swing Service) (생략)</p> <p>제 7 조 역스윙서비스 (逆 Swing Service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생략) ② “결제자금”이란 구 하나은행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 및 하나카드 결제자금으로 한정합니다. ③ ~ ④ (생략) <p>제 8 조 기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~ ② (생략) ③ <u>제4조, 제5조 및 제6조의 서비스는 변경 가능하며, 변경 시 변경 사유, 변경 내용 등을 변경 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합니다. 단,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 제21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려드립니다.</u> 	<p>(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요건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좌동) 2. 이 예금을 하나금융투자 증권계좌로 등록하고 월 1회 이상 증권매매 거래 시 3. 하나카드사와 당행 제휴카드사의 신용(체크)카드를 합하여 월10만원 이상 이 예금에서 결제 시 4. ~ 5. (좌동) <p>(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좌동) ③ 이 예금과 하나금융투자의 CMA 증권계좌 간의 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면제됩니다. 단, 창구거래는 수수료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④ (좌동) <p>제 6 조 스윙서비스 (Swing Service) (좌동)</p> <p>제 7 조 역스윙서비스 (逆 Swing Service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좌동) ② “결제자금”이란 KEB하나은행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 및 하나카드 결제자금으로 한정합니다. ③ ~ ④ (좌동) <p>제 8 조 기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~ ② (좌동) (삭제) 	<p>증권사명 변경 카드사명 변경</p> <p>증권사명 변경</p> <p>행명 변경</p> <p>항 삭제 (내용 중복)</p>
--	--	--